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6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2

I. 제안경위

2025년 5월 2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처우개선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을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생략) <u><신설></u>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처 및 용도 등에 대한 구

1) 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u>②</u> ~ <u>⑤</u> (생략)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u>제1호</u>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 ④ (생략)	<u>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u> ~ <u>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① ----- ----- ----- ----- ----- ----<u>제1호 및 제2호</u>-----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와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2025년 민간 3.1%, 공공²⁾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그런데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일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법인의 경우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의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용장려금이 지급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음.⁴⁾

이에 따라 개정안 제30조제2항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⁵⁾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사용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고용장려금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장에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보호고용 시설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3)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국조실(부패예방감시단) 점검('17.3~9월) 결과 일부 법인의 경우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확인

5)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은 지원받은 장려금을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아 임금수준이 낮은 편인바,⁶⁾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처우개선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직업재활시설마다 특성이 달라 처우개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어렵고, 오히려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과 장애인 고용 책임을 이행하는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어 그 간 용도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 제한은 다각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6)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94.9%는 직업재활시설 소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년 기준)”(「“훈련장애인은 월급 10만원”...‘보호고용’이란 인권착취」 일부 발췌, 2023.3.28. 한겨레 21)

문 의 처
02)6788-5539